

# 2021 기업윤리 브리프스 <7월>

(주제: 중대재해처벌과 기업윤리)

## ***COVER STORY***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안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해 산업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실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전문가 코칭

###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배 규 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Q1.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까?**

산업현장에서 매주 몇 차례 크고 작은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더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이런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서로 정반대 이유로 문제가 많다면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으나 산업현장에는 산재발생 위험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무거운 물건을 다루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기계가 움직이는 곳에서 일하거나, 회전이 빠른 기계나 내리누르는 프레스와 같은 기계를 다루는 장소에서는 주의를 게을리 하면 산재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위험성 있는 작업장에서는 우선 산재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비, 작업환경을 바꾸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산재로부터 100%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작업환경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작업을 할 수도 있고, 낯기에 쫓겨 서둘러서 작업할 수도 있다. 근속연한이 길고 경험이 많은 노동자들은 어디가 어떨 때 위험한지를 알고 일할 수 있으나, 임시근로자, 하청노동자, 대체 노동자 등은 작업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못하다.

안전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안전관리자가 현장의 위험한 곳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전관리시스템이나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곳도 있다. 중소기업의 상당수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제

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있다.

**Q2.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규제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은 산업안전보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는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최우선이다. 산재, 특히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납기에 쫓기느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줄여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 안전시스템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며, 산재발생이 많은 곳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산재를 줄일 수 있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현장의 관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의 후진적 산업안전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산업안전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만, 산업안전의 기본조치(안전모, 안전화 착용,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방지 안전 고리를 매도록 하는 것)를 지키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산재예방과 산재재발을 막기 위한 노동감독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만로는 산업안전시스템이 개선되기 어렵다. 산재발생 유형이나 원인이 유사한 경우가 많은 업종 별로 기업을 넘어서서 노사가 전문가들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산재, 특히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산재,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기업 수준, 업종 수준에서 노사가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사례돌보기

### 꼬리를 무는 중대재해, 꼬리만 자르는 기업윤리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보수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19살 김모 씨가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2인 1조로 진행해야 할 스크린도어 보수작업을,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사망자는 홀로 작업하고 있었다.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관리 외주업체 은성PSD는 작업장 실태점검이나 안전교육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하청업체 관리 책임이 있는 원청 서울메트로도 현장점검이나 용역업체 안전교육 등의 관리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당시 소지품이 정비 도구와 컵라면 한 개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 꼬리를 물고 되풀이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작업을 하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40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집계된 과태료만 1억 원 수준이었다. 대표적 위반사례로는 충돌 방지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작업 개시 전 가스 농도를 체크하는 등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5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가 300kg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씨는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용역 하청업체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원청업체에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업무에 투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안전 규정 미비, 하청의 재하청 구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망사고의 중대재해는 꼬리를 물고 되풀이되고 있다.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조치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예방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들이 후퇴했고, 5~49인 사업장은 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과 동시에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제안이유는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사망자 1명 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현실에서, 벌금 형의 하한을 1억 원 이상으로 높여 솜방망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이유에서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 원이며, 한국 노동자 177명이 사망해야 나오는 액수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안전 규제 위반의 페널티가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상회해야 사업주에게 경고의 의미가 있다.

2019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855명이다. 이 중 5~49인 사업장에서 364명(42.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93명(34.3%)이 사고로 사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들 기업이 정부나 은행의 도움 없이 회생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한계기업이 공급망 구조에서 생산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원청기업에 값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청업체에서도 사고가 빈번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로 지금까지 원청기업은 면책특권을 누려온 셈이다. 반면, 우리와 같이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는 산업안전 선진국에서는 원청기업이 안전조치 의무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는 계속 다른 입장을 개진하며 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소규모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보완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사라지게 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입증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입증 책임 전환으로 특정한 요건만 갖춰지면 경영책임자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방식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든 현장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느냐며 과도한 조치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징역 하한을 상한으로 바꿔주고, 사업주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규정을 충족하면 면책해줄 것을 호소할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산재사고 발생 원인이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75.6%)가 압도적이라는 주장을 하며, 사업주만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반문한다.

###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관리방안**

기업은 노후설비·위험기계 등 작업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이 비용 절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관리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재래형 공장을 안전한 미래

형 일터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이 증가하는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체는 안전보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산재예방대책이 대체로 미흡한 상황이다.

건설업 및 제조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심한 안전관리 감독을 일상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한다. 추락위험 방지 조치로는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및 경고 표지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지붕 위 작업 시 작업 발판 등 설치, △달비계 작업 시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끼임 위험 방지 조치로는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기동장치 잠금 조치, 표지판 설치. 필수 안전 보호구인 안전대·안전모·안전화의 지급 및 착용, 상시 점검 등이 있다.

## 보고서리뷰

### 산재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과 산재예방 계획

- 우희숙(2018), “산업안전과 형법”,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 고용노동부,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20. 5.)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발표하여 사업주나 실제 행위자에게 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이것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을 사업주나 실제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파악하고, 주의의무위반을 처벌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책임자'를 색출하여 형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는 프로세스가 반복된다. 우희숙의 논문 “산업안전과 형법”은 형법적 책임 추궁이 산업재해의 예방에 효율적이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보여주는 숫자에 따르면(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응답한다.

####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의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재해는 2010년 98,645명에서 2017년 89,848명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7년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쉽게 산재보상을 받게 되자 2018년 102,305명, 2019년 109,242명으로 증가했다. 사고사망자는 2010년 1,114명에서 2014년 992명으로 떨어진 뒤 900명대 수준에서 정체되다가 2019년 855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최초로 800명대에 진입하고, 사고 사망만인율도 처음으로 0.5‰ 이하인 0.46‰로 하락하였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이 428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206명(24%)이다.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76.8%가 발생해서 657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유형별 사고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떨어짐(36.6%)·끼임(11.6%)·부딪힘(8.7%)에서 절반 이상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사업주나 실제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 형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의 한계

인간공학(human factors)의 관점에서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휴먼 에러(human errors)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저자는 휴먼 에러 발생의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적절

한 형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만일 그 위반으로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만, 그 법정형의 상한은 최대 1년이다. 산업안전 선진국 사례처럼 처벌조항의 신설이나 법정형의 상향이 산업재해 예방에 반드시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법원(2008도7030판결)은 사업주가 비계 해체 작업 과정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의무를 위반한 사건에서 설치 의무가 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규칙은 위험 예방을 위한 모든 행위 유형을 담을 수 없고, 새로운 기술기준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소 및 처벌률이 낮아지는 행정형법의 집행 결손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집행의 결손이 지속되면, 사업장에서는 규칙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통념이 굳어져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처벌기준만 상향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형법적 대응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산업재해는 물적 원인(불안전 상태)과 인적 원인(불안전 행동)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다. 인적 원인에는 휴먼 에러와 위반(violation)이 있고, 휴먼 에러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의도적인 위반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휴먼 에러가 원인인 산업재해는 형법만으로 예방될 수 없으며, 의도적인 위반의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형법적 대응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여 규칙에 나열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 작업방식 및 작업환경에 적합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영업비용으로 간주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운에 맡겨버릴 가능성이 높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이 있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위험성평가는 형법적 예방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규제에 의한 예방정책’이므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안전 선진국처럼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저자는 제안한다. 또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선진국과 비교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5차 산업안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사고 사망만인율을 2024년 0.2‰대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안에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의무 주체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원하청이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게 했으며,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실행하도록 했다. 또한, 계획안에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락·끼임·부딪힘 등 5대 사망사고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안전보건 주체별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윤리 차원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위험성평가를 산재보험료 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의 사망사고 위험요인 관리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내용을 개편하고 효율적 이행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한편,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설비의 설치 시 공정안전관리(PSM)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앞장서 안전보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안전보건 문화가 기업 윤리경영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게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 윤리경영 가이드

### 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 주주 및 투자자



기업은 최고 경영이념 속에 주주에 대한 권익보호규정과 관련된 장치를 마련하여 주주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Q. 기업이 주주 및 투자자를 위해서는 어떤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지요?

기업은 주주 및 투자자들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 목표는 높은 배당과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이며 사회적 목표는 사회적·윤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를 위한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1.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무엇보다 회계 장부의 내용에 대해 진실성과 투명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투명한 기업 만들기 4단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한 문화 정착 - 투명한 경영 실행 - 투명한 재무관리 실시 - 투명한 약속과 이행

#### 2. 경영실적 공정공시 실천

주주와 투자자는 기업의 공시를 참조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기업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공시는 분기마다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첨부서류(자본시장법 §161, 시행령 §171)>

제출사유	첨부서류	거래소 공통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도 확인서,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증명서류</li> </ul>	동일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사록,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증명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증명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산사유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증명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증가 또는 감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에 관한 이사회 결의 (예외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은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사록 등 증명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채권은행의 결정서·계약서·합의서 등 증빙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장 부분 등 법원송달서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증권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 정부 등에 제출하였거나 통지받은 서류와 한글요약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B, BW, EB의 발행 결정 (예외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사록 등 증빙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또는 처분 (신탁계약 해지)의 결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사록 등 증명서류</li> </ul>	동일 또는 별도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 주식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li> <li>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의사록 등 증명서류, 계약서(계획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의무 존재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한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참조: <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220>

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등 통제장치 확보

1)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이란?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을 사고파는 데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회피한 경우

## 2) 내부자에 포함되는 자

- **회사 내부자**
  - 해당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 **내부자는 아니나 내부자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 회사의 인가허·허가·지도·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자
  -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계약을 교섭한자
  - 주요주주 및 내부자로 인정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 **직접 정보를 받은 자**
  - 회사내부자 및 내부자로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처벌

- **형사책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받음
    -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 원
- **민사책임**
  -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기타 주주 및 투자자를 위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 |                     |                        |
|---------------------|------------------------|
| ● 적절한 주주 배당 실시      | ● 주주의사결정 참여 정도 확대      |
| ●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홍보 활동 | ● 주주권 및 소액주주 권리보호장치 마련 |
| ● 주주 및 투자자의 개인정보보호  | ● 서면결의 제도 채택 등         |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현장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의 '협력회사'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기업 윤리경영 모델(권익위)
-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전경련)
- 기업공시 길라잡이(<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220>)
- 금융감독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https://www.fss.or.kr/fss/scop/sub01\\_law02.jsp](https://www.fss.or.kr/fss/scop/sub01_law02.jsp))

### 1. 갑질 심각한 능력 위주 스타트업·IT기업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K회사에서 임직원 116명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임신한 직원 10명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파악된 스타트업·IT 기업 내 직장갑질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올해 1~5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천1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532건으로 전체의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타트업 악질 사장의 직장 갑질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참고: 연합뉴스, 2021. 06. 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6016200004>

### 2. 중대재해법 '나비효과', 고용부 시험에 형사소송법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직류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과목에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대폭 강화돼 회사 존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법률인 만큼, 현장에서 근로감독과 사고 조사 등에 관여할 공무원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고려대 로스쿨 P교수는 "시험 과목에 형소법이 추가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기업이 우려하는 부적절한 검찰 송치도 줄어들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이 보다 예측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참고: 매일경제, 2021. 06. 1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79234/>

## 해외 동향

### 1. G7,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재무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아마존, 구글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일부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조세일보. 2021. 06. 06.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25258>

### 2. 美 거대 노조 전미자동차노조(UAW) 前위원장, 조합비 횡령 벌미

미국 전역의 자동차·기계 부문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Union-UAW) 전 위원장이 10년간 거액의 조합비를 횡령해 유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배상금·몰수금 폭탄을 맞았다. UAW는 1935년 설립되어 노동자 40여만 명이 가입, 미국 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대표적 거대 노조다.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8개월과, 조합에 55만 달러를 배상하고, 연방국세청에 4만 2천 달러 벌금납부를 명령했다.

\* 참고: 조선일보, 2021. 06. 14.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6/14/NW6EOKCMYZEQHPBVSEIURHOOU/>

## 행사소식

###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양질의 청렴콘텐츠 발굴을 통해 청렴인식을 재고하고 사회저변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접수 :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누리집(<https://www.integritycontents.kr/>)

일정 :

- ◆ 수필,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2021. 06. 14 ~ 09. 10
- ◆ 영상, 노래: 2021. 07. 01 ~ 10. 04

## Corporate Compliance & Ethics Forum

준법/윤리경영 관련 사례 발표, 네트워킹 및 워크숍 세션 등의을 통해 윤리 준법 담당자들의 업무 지식 및 활동의 범위 확대 기회 제공

주최 : Consero Group

일시 : 2021년 9월 12일 ~ 14일

장소 : Dallas Omni Mandalay, Irving, TX

참고 : <https://consero.com/events/corporate-compliance-ethics-forum/>

## 경총포럼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영활동의 어려움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 및 구조혁신을 통한 생존 전략 모색

주최 :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21년 7월 8일

장소 : 조선포텔



### 가치로 창출하는 가치

- 책,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가치' 개념이 급격히 부상했다. 일반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고민이 깊어졌다.

사회적 가치 개념이 부상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자본주의 부작용에 따른 중산층 몰락, 빈부격차 확대, 공정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신 소비자(MZ세대) 등장 등의 사회 환경 변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동의 이익, 공동체적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개념에 앞서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과는 별개의 부수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사회적 가치는 기업경영활동 자체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영되어 창출될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공분야는 기관의 고유목적 외에 조직운영과정에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찾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은 본래의 경영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적정단계에서 필요한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두 포인트는 결국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모든 주체가 인식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처하는 태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선례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 윤리 한 스푼

**윤리 한 스푼**



우리 애가 지금 학교가 끝났는데 애 엄마가 일이 있다네?

자네가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

타인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 근절, 서로를 향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 공감+

**공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항해 중이던 배가 폭풍으로 무인도에 불시착했다.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난파된 배에서 몇 달치 식량과 씨앗을 찾았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버릴 식량을 얻기 위해 씨앗을 심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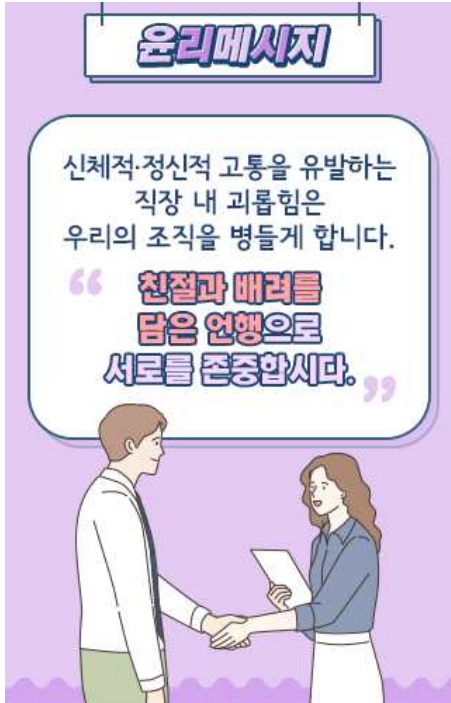
그런데 씨앗을 심기 위해 판 땅에 황금이 잔뜩 묻혀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허겁지겁 황금을 캐내기 시작했다.

몇 달 뒤, 황금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식량은 떨어졌고 사람들은 모두 지치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구조를 기다리기 위해 씨앗을 심을 체력도,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시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 윤리문자



## 독자 퀴즈

Q. 산업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제정된 법안의 명칭은?

- ① 산업안전보건법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③ 중대재해처벌법
- ④ 근로기준법

- ◆ 지난 호 정답: ③
-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mailto:mail@innocrew.co.kr))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이상준님, 김은지님, 오성민님, 김윤미님, 이명섭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